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경제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제선지능인 자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892호)
- 경제선지능인 지원법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004호)
- 경제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관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82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12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2
2. 입법배경 및 검토의견	16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22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8
1. 정의	28
2. 가정의 책임	31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33
4. 조기진단 등	38
5. 교육 지원 등	42
6. 고용 및 직업훈련 등	46
7.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49
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58
9.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60
10. 부칙	64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9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4.

(3) 회 부 일 : 2025. 2. 5.

나.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안 제2조).
- (3)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4)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7)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연구,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 (8)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2.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7.
- (3) 회 부 일 : 2025. 2. 10.

나.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이러한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음.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을 겪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함(안 제4조).
- (4)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5)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6) 경계선지능인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자기결정권과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8)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자립·취업·자녀양육·평생교육·의료를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11)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12)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8조).

3.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6. 13.
- (3) 회 부 일 : 2025. 6. 16.

나.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도록 함(안 제4조).
-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과 보호자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5) 경계선지능인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자기결정권과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7)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자립·취업·자녀양육·평생교육·의료를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10)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11)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둬(안 제28조).

- (12)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제1항).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세 제정안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각각 5개의 장과 38개의 조문(「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서영석의원안”이라 함), 5개의 장과 34개의 조문(「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이하 “강선우의원안”이라 함), 5개의 장과 34개 조문(「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하 “서미화의의원안”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 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의 기초적 정책 수립 사항뿐만 아니라, 조기진단과 지원신청 절차,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자립, 취업 및 고용, 자녀 양육, 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강선우안과 서미화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동일하며, 범제명, 기본계획의 법정사항(안 제8조), 조기진단의 내용(안 제14조), 자립지원의 내용(안 제19조), 취업 및 고용 지원의 내용(안 제20조), 보호자 지원의 범위(안 제24조) 등 일부 조문의 표현 방식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참고자료 1: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 조문 차이 비교).

< 세 제정안 구성 체계 비교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가정의 책임)	제6조(가정의 책임)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요청)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요청)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요청)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권리보장 및 지원	제3장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제3장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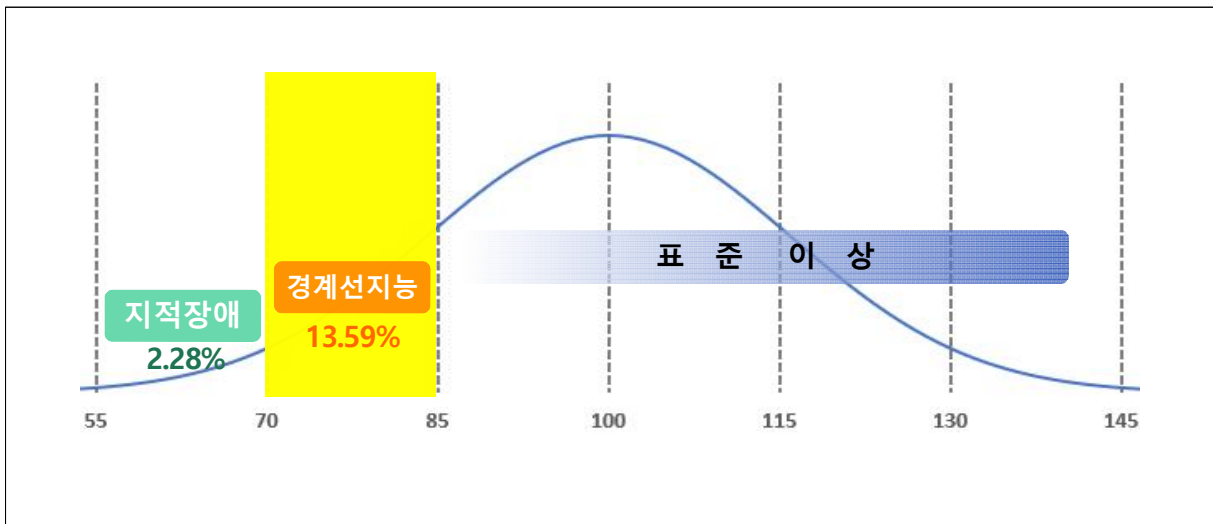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12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12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12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13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4조(의사소통지원)	제4장 경계선지능인 진단 및 지원	제4장 경계선지능인 진단 및 지원
제15조(지원신청 등)	제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제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제1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15조(지원신청 등)	제15조(지원신청 등)
제17조(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제1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1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18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17조(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제17조(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제19조(교육 지원)	제18조(교육 및 활동·돌봄 서비스 지원)	제18조(교육 및 활동·돌봄 서비스 지원)
제20조(자립 지원)	제19조(자립지원)	제19조(자립지원)
제21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제22조(자녀양육 지원)	제21조(자녀양육 지원)	제21조(자녀양육 지원)
제23조(평생교육 지원)	제22조(평생교육 지원)	제22조(평생교육 지원)
제24조(의료 지원)	제23조(의료 지원)	제23조(의료 지원)
제25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제24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제24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제4장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6조(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제25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제25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제26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임무)	제26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임무)
제28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7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7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9조(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28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제28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제30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제29조(비밀유지 의무)	제29조(비밀유지 의무)
제31조(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제30조(지도와 감독)	제30조(지도와 감독)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1조(위임·위탁)	제31조(위임·위탁)
제32조(비밀유지 의무)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지도와 감독)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위임·위탁)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제35조(벌칙)	부 칙	부 칙
제36조(벌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입법배경 및 검토의견

-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란 71 ~ 84 사이의 지능지수로 정의되며, 지능의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전 인구의 13.59%가 이에 속함.¹⁾

<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



자료: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

-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는 1961년 제6차 정의까지는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하는 사람도 지적장애로 관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지만, 1973년 제7차 정의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들(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을 지적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바 있음.²⁾
-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5(Diagnostic and Statistical

1) 신진숙. (2010). 지적장애아 교육. 서울: 양서원.

2) 변관석, & 신진숙. (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특정 지능지수로 정의하지 않고 임상적 주의가 필요하거나 개인의 치료와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³⁾

□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565만 명에서 66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⁴⁾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정의가 없어서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로도 불리우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는 상황으로,⁵⁾

의사소통 과정, 사회활동 등에서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공적인 지원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⁶⁾

또한, 법적으로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에 관한 복지 혜택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지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지적장애인과 비교해서도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⁷⁾

3) 구슬이. (2024).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과 과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4)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이슈와논점. 2024. 1.

5) 김용훈. (2023).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 발달장애연구 (KADD), 27(1), 1-17.

6) 다만, 시설보호아동, 기초학력부진학생 등 일부 취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시설보호아동: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기초학력부진학생: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한 1건의 결의안과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2건의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 제21대 국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결의안 및 법률안 제출 현황 >

안민석의원	허영의원	최영희의원	강기윤의원	안민석의원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212001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109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2534)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3713)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6168)

주 1: 괄호 안은 의안번호

현 제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9건의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에서 7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22대 국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제출 현황 >

조승환의원	홍기원의원	허영의원	권철승의원	안상훈의원	김희정의원	서영석의원	강선우의원	서미화의원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76호)	경계선지능인 교육지원법안 (11321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3025호)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15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3298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4666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7892호)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8004호)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829호)

7)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4개(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20개(강릉시, 전주시,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등)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참고자료 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⁸⁾

-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2022년에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및 종합계획(2023년~2025년)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2024년 기준 24.5억원).⁹⁾

□ 세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 교육, 자립생활, 취업 등의 지원 서비스를 보다 개별화되고,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세 제정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제정 법률안과 대부분 중복·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 제정안은 모두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8)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노년학습자’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내 학생’에게만 특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위 현황에서는 제외함.

9)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하고, 목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자립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등과 같은 추진체계,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법률안의 제명, 지원신청 절차,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실시, 지원기관 설치 여부 및 명칭, 설립·운영 방식, 경계선지능학생을 위한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참고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하여 제정안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전달체계 및 조기진단·취업·교육·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는 교육, 스페인은 고용과 관련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일본 및 스페인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사례>

<일본>¹⁰⁾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은 통상 학급에서 실시하면서 장애에 따른 특별지도를 통급지도교실에서 실시하는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시각장애인, 난청자, 지체장애인, 병약자, 언어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증, 학습장애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¹¹⁾인으로, 지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음.
- 지도의 대상 중 학습장애인은 경계선지능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학습장애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 발달이 뒤처지는 않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것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해 지도를 실시하며, 학습장애인의 지도시간은 연간 10시간~28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스페인>¹²⁾

- 2021년, 스페인 정부는 「경계선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입법왕령」¹³⁾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장애 판정척도 20%~32%¹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2,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10)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23.6.

11) 아동기의 지속적인 주의력 부족으로 산만함, 놀이 및 학습 장애, 감정조절 장애에 의한 충동적 과다활동을 보이는 소아정신질환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의미함.

12)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13) 입법왕령(Real Decreto Legislativo):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로, 입헌군주제인 스페인에서는 그 명칭을 왕령(Real)으로 함.

14) 33% 이상은 지적장애인으로서는 지원을 받음.

3. 관계 부처¹⁵⁾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법안 적용 대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원내용 결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욕구 파악, 전달체계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유사법안에 대해 장애계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경계선지능(IQ 71~84)에 국한하여 지원대상을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학습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8월~'25.4월)¹⁶⁾ 등을 기반으로 영역별 생활실태, 정책수요, 지원방안, 별도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15) 특정 조문 내용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부처의 의견은 해당 조문 검토 내용에 적시함.

1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2025년 하반기 공표 예정임.

나. 기획재정부

-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개념, 지원대상, 지원 필요성,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등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정 시행후,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발생이 우려됨.
- 지능검사 IQ 71 ~ 84 사이 인구는, 통계상 전체 인구의 13.6% (약 700만명)에 해당*하여 실제 지원 필요성 및 기존 복지제도 수급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생계급여 대상자('25년 127만 가구)보다 큰 규모

다. 법무부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및 지원서비스를 부정수급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그 정도 및 양벌규정을 들지 여부는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며,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간 용어 사용이 상이하므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 또한 우리 형사·사법절차는 이미 진술에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증인·피의자 등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경계선지능인

의 절차상 권리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함.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육부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는 지능지수 측면에서 통용되는 기준(IQ 71 ~ 84)만 있을 뿐, 행동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 범위와 판단기

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계선지능인의 범위,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지원규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관련, 현행 「평생교육법」은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별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별도 인력양성을 규정할 경우, 통합교육 저해 우려됨.

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며,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경계선지능’의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행정체계와의 기능 중첩 및 현장 혼선이 우려되고,

경계선지능을 새로운 법적 범주로 고정할 경우 적용 범위의 경직화 또는 과도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 관련 법령과의 중복 적용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부족 문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임.

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는 찬성하지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은 또 다른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별도의 법안 제정은 오히려 현재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와의 연계나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장애인’을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별도의 전달체계 마련 없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기존 장애인복지 전달체제로 편입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축소가 우려됨.

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경계선지능인은 인구학적으로 전체의 약 13.5%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습, 취업 등의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지원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본 법안이 제정되는 것에 찬성함.

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경계선지능인 모두를 법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법률이 제정되기 전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선행조사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별법안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차.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법적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

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경계선지능인을 판단하는 지표가 모호하여, 명확한 통계수치가 파악되지 않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별법안으로 제정하는 것보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경계선지능인</u> ”이란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경계선지능인</u> ”이란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경계선지능인</u> ”이란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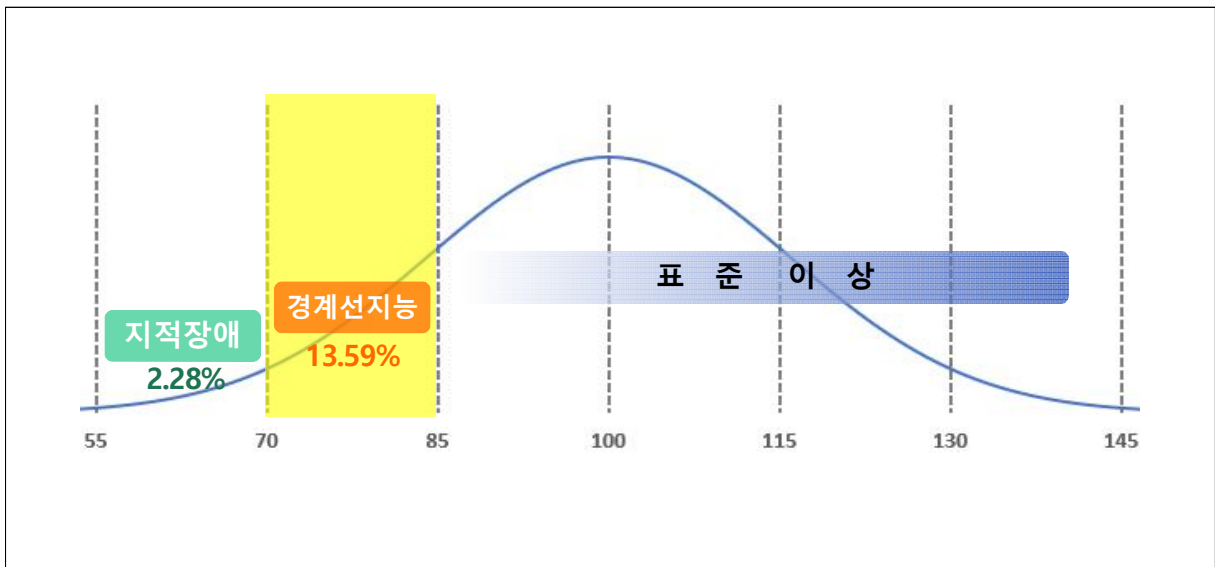
□ 세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대체로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매우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음.

□ 통상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하위 법령¹⁷⁾에서 정하는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지수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인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2 표준편차 이하)보다는 지능이 높으나 -1 표준편차 미만인 사람으로, 표준정규분포표에 따르면 전 인구의 약 13.59%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함.

17)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중 “6. 지적장애 판정기준”

<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



자료: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

□ 세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① 발달장애인을 배제하고, ② 구체적인 지능지수 수치를 요건에 적시하지 않으면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미 등록장애인으로서 각종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명확하게 인식·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지능인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 그 외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제정안의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임.

다만, 현재 추정되는 잠재적 대상자의 규모가 약 565만 명에서 667만 명¹⁸⁾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제정안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의 법령상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8.~2025.4.)¹⁹⁾ 결과를 참고하여 의학계, 교육계,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18) 구슬이. (2024).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과 과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1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2025년 하반기 공표 예정임.

2. 가정의 책임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6조(가정의 책임) <u>가정</u> <u>은 경계선지능인의 성</u> <u>장에 대한 1차적 책임</u> <u>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u> <u>하여야 하며, 경계선지</u> <u>능인이 자기 발전을 실</u> <u>현하고 주체적 사회구</u> <u>성원으로 성장·발전할</u> <u>수 있도록 해당 여건을</u> <u>조성하는 등 노력하여</u> <u>야 한다.</u>	제6조(가정의 책임) <u>가정</u> <u>은 경계선지능인의 성</u> <u>장에 대한 1차적 책임</u> <u>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u> <u>하여야 하며, 경계선지</u> <u>능인이 주체적 사회구</u> <u>성원으로 성장·발전할</u> <u>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u> <u>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u>한다.</u>	제6조(가정의 책임) <u>가정</u> <u>은 경계선지능인의 성</u> <u>장에 대한 1차적 책임</u> <u>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u> <u>하여야 하며, 경계선지</u> <u>능인이 주체적 사회구</u> <u>성원으로 성장·발전할</u> <u>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u> <u>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u>한다.</u>

□ 세 제정안에서는 가정이 경계선지능인 성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적 지원체계보다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계선지능인의 양육 특성을 고려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임.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이처럼 ‘가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제정안의 동조항은 이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세 제정안은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즉,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및 그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계선지능인의 성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정에 지우는 내용의 동 조항은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다소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 앞서 살펴본 유사입법례인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는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정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 세 제정안의 경우는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욕구, 상황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²⁰⁾

일반적인 청소년과 달리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한층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가정의 1차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세 제정안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성장·발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정에 지우는 것은 입법취지에 다소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0) 「서영석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u>경계선지능인의 가족</u>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u>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평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u>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평가	<u>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u> 9. <u>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u> 10.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u>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u>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u>	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u>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실시하는 경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세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서영석의원안·강선우의원안에 비해 서미화의의원안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법정사항에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자립지원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체계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실시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소관부처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율 방식은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됨.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조기진단 등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 18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u>	제 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이하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 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을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며,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이하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의 청소년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돌봄·보호 등을 위한 기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및 개입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진단 실시 및 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의 실시와 검사결과의 통지 및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연계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의 실시와 검사결과의 통지 및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연계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세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 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전문 인력 양성’ 등 정책 수립 강구 의무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서영석의원안에서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원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국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검사 실시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구체적인 진단검사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는지(서영석의원안), 미성년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일괄 실시(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원)인지 차이가 있고,

특히,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원안에서는 진단검사의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조정해야 할 것임.

-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진단검사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기진단 등’에 관해서는 유사입법례로 「발달장애인법」을 참고할 수 있는데, 동 법에서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교육 지원 등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20조(교육 지원)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 청소년(이하 “경계선지 능아동”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 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 지능아동이 맞춤형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 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 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 계선지능아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를 실시하는 학교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	제18조(교육 및 활동· 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 청소년(이하 “경계선지 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 力)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 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학습법 개발, 전문교사 양성, 일반교 사 교육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 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 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 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 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 로 제1항에 따른 맞춤 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 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	제18조(교육 및 활동· 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 청소년(이하 “경계선지 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 力)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 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학습법 개발, 전문교사 양성, 일반교 사 교육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 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 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 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 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 로 제1항에 따른 맞춤 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 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등에 <u>필요한 사항</u> 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u>협의하여 정한다.</u>	른 방과 후 활동·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 <u>필요한 사항</u> 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u>협의하여 정한다.</u>	른 방과 후 활동·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 <u>필요한 사항</u> 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u>협의하여 정한다.</u>

□ 세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아동·청소년에 대한 나이, 수학능력,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의 경우는 전문교사 양성, 일반교사 교육 등에 관한 지원도 규정하고 있으며, ‘방과후 활동·돌봄서비스’로 명칭을 달리 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유사하게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28조²¹⁾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1)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지적, 자폐성장애 등 포함)²²⁾는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²³⁾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음.

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계선지능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대부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과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또는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초·중등교육법」과 「기초학력 보장법」에 경계선지능아동·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6.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22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 이 경우 <u>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u>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u>하여야 한다. ② <u>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u>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u>하여 정한다.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 소개, 공공일자리 지원,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u>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u>하여 정한다.

□ 세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행 방식(의무 또는 재량), 주체,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서영석의원안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 지원이 재량사항인데 비해, 강선우의원안에서는 고용촉진 필요조치 강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미화의의원안은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서영석의원안에서는 직업훈련의 지원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강선우의원안은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미화의의원안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간 고용 등 지원 사항 비교 >

구분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지원 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 <u>지원을</u> 할 수 있음. • <u>보건복지부장관이</u>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u>강구해야 함.</u> • <u>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u>은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소개, 공공일자리 지원,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을 <u>실시</u>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하위 법령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아울러, 세 제정안에서는 관련 하위 법령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서영석의원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법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²⁴⁾이고, 동 법의 소관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임을 고려하면, 관련 하위 법령을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이들과 보건복지부장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계선지능인의 범위가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부터 지능부족이 상당히 정상범주에서 먼 사람까지 다양할 것이므로, 모든 경계선지능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 26조(중양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양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중양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 25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① <u>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이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② 시·도지사는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	제 25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① <u>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이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② 시·도지사는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2.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3.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5.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직무 및 배치기	하게 할 수 있다. ④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임무) ①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3.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에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하게 할 수 있다. ④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임무) ①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3.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에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① <u>시·도지사는</u>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u>를 <u>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u>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7.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8.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9. 지역 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5.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7.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8.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9. 지역 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및 연계 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4. 관할 지역 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8.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9.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경계선지능인지	축적 및 관리 10.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11.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1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13.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계선지능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축적 및 관리 10.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11.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1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13.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계선지능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직무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인식개선, 정보제공,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전반적인 규율 방식과 수행업무 등은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

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세 제정안은 기관 명칭, 설치·운영 주체, 수행업무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방식이 효율적인지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영석의원안**에서는 중앙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센터로 명칭을 구분하고, 설치·운영 주체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달리 규정하면서 수행업무를 다르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에서는 설치 주체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시사로 구분하였지만, 명칭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수행업무 또한 구분하지 않았음.

따라서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에 따르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센터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센터 간 역할 구분이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편람 마련, 종사자 교육 등과 같은 지원 및 관리 업무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홍보, 상담, 사례관리 등과 같은 현장 대면 업무 간 수행 주체에 따른 구분이 없게 되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세 제 정 안 간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관련 규정 비교 >

구분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
명칭	•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의무) • 시·도지사(의무) • 시장·군수·구청장(필요한 경우에 재량)		• 보건복지부장관(의무) • 시·도지사(의무,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는 재량)
수행업무	•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지원 •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 관할 지역 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u>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u> • <u>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u> • <u>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u> • <u>경계선지능인에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u> • <u>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u> • <u>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u> • <u>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u> • <u>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u> • <u>지역 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u> • <u>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u> • <u>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u> • <u>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u> •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
	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위법령 및 기타사항	• 중앙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직무 및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 배치 노력 규정 • 경계선지능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 채용 가능 규정

주1):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의 음영 표시는 서영석의원안의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업무, 밑줄은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

□ 보건복지부는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의원안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과 지역 센터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업무범위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명칭과 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35조(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체계의 업무와 기관·단체의 범위 등 통합지원체계의 운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전담공무원, 전문인력의 배치 등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영석의원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공공기관,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상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 각각의 지원체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전담기구를 구축하여 경계선지능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서영석의원안에서는 이미 시·도지사가 지역경계선지능인지

□ 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업무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가 전담기구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제30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u>를, <u>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u>를 각각 둔다.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28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u>를, <u>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u>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28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u>를, <u>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u>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세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소속의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

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복지지원과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반 행정과 구별하여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²⁵⁾

□ 이에 관해 **교육부**는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고,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999호)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²⁶⁾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또는 최근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이하 생략)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부칙

서영석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미화의의원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 세 제정안은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두고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
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립, 지원 내용 관련 하위 법령 제정, 경계
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등에는 부처 간 협의, 시범사업,
예산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일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강선우의원안·서미화의원안 조문 차이 비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강선우의원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법안」 (서미화의원안)	비고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u>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u> 9. <u>경계선지능인의 자립지원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u> 10.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미화안은 기본계획 법정사항에 가족·보호자 및 자립지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
제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경계선지능인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을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며,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u>	※ 서미화안은 ‘개발 지원’ 포함 등 표현을 더 구체화
제19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형성과 관리 지도, 사회성 훈련 및 경제·법률·문화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u> 1. <u>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의 지원</u> 2. <u>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u>	※ 서미화안은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 포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u>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u> 4. <u>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u>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계선지능인</u>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함 등 직접 지원 항목을 구체화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 소개, 공공일자리 지원, 창업지원 등 <u>고용촉진사업을 실시</u>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서미화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제24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u>경계선지능인</u>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서미화안은 연령 제한 없이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

〈참고자료 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명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4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9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4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6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8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연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2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2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3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24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주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내 학생’에게만 특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위 사례에서는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 후, 재구성(최종검색일: 2025.7.8.)